

담양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안 예고

「담양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2. 9. 28.

담양군의회 의장



1. 조례명 : 담양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안

2. 제안이유

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8조의4에 따라 담양군 금주구역의 지정 등으로 음주폐해를 예방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목적에 관한 사항(안 제1조)
- 나. 책무 등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다. 금주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라. 관리 및 일시허용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- 마.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바.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- 사.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- 아. 과태료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)

4. 입법예고 기간 : 2022. 9. 28. ~ 10. 4.(7일간)

5. 의견제출

- 이 제정안에 대하여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○월 ○일
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담양군의회 의장(참조 : 의회
사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에는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

다. 보내실 곳 : 담양군의회 의회사무과

-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
- 전화 : 061-380-3507~8(FAX 061-380-3590)

라. 의견제출 방법 : 전화, FAX, 직접방문, 우편

6. 제정조례안 : 붙임 참조

□ 의견제출 서식

의견서

1. 조례안 담양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안

관련조문

의견

2. 의견

3. 기 타

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22년 월 일

의견 제출인 주 소

(전화 :)

성명 (서명 또는 인)

담양군의회 의장 귀하

담양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8조의4에 따라 담양군 금주구역의 지정 등으로 음주폐해를 예방함으로써,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음주”란 술을 마시거나 열린 술병을 소지한 상태를 말한다.
2. “건전한 음주문화 환경”이란 담양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가 담양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에서 군민(이 조례에서 군의 주민을 말한다)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을 통해 음주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음주문화를 건전하게 조장(助長)하는 환경을 말한다.
3. “금주구역”이란 군수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하여 부정적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그 조장행위의 제한 등 관리하는 구역을 말한다.
4. “음주폐해”란 음주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폐해를 말한다.
5. “절주”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·신체적·사회적 피해 등을 주지 않을 정도로 절제(節制)하는 음주를 말한다.

제3조(책무 등) ①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발적 참여유도에 필요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.

②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과 관련된 군 소재 기관·단체(이하 “기관·단체 등”이라 한다)는 제6조에 따라 해당 사업비를 지원받을 경우 그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.

③ 모든 군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「국민건강증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제2항에 따른 자신 및 가족의 건강증진과 다른 사람에게 음주폐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고,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·협조해야 한다.

제4조(금주구역 지정 등) ① 군수는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한다. 이 경우 지역 주민, 기관·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.

1.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의 도시공원중 어린이공원

2. 「도서관법」 제2조제4호의 공공도서관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군 공보,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고시해야 한다.

③ 군수가 법 제8조의4제3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금주구역 안내표지판은 해당 지정장소의 입구 등에 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1의3의 방법과 같이 부착해야 한다.

제5조(관리 및 일시허용) ① 군수는 금주구역에서는 누구나 음주를 하지

않도록 계도하고, 이를 위반한 때에는 과태료의 부과·징수,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관리해야 한다.

② 군수는 금주구역에서 지역축제 및 행사 등으로 음주의 일시적 허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가능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운영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.

제6조(경비지원) ① 군수는 기관·단체 등이 금주운동을 전개하거나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비를 지원받으려는 기관·단체 등은 그 사업의 수행전에 사업내역을 제출하여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7조(교육 및 홍보) ① 군수는 금주구역 지정 및 운영,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등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절주 및 금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8조(업무의 위탁) ① 군수는 제7조의 교육 및 홍보사업을 직접 추진하되, 해당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기관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업무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, 동일한 위탁운영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있다.

제9조(표창) 군수는 건전한 읍주문화 환경조성, 절주 등을 위하여 이바지한 실적이 있는 군민, 공무원, 기관·단체 등에 대해서는 표창할 수 있다.

제10조(과태료) ① 군수가 법 제34조제3항제1호 및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3호의2에 따라 금주구역에서 음주행위를 한 사람에게 부과·징수하는 과태료는 2만원 이하로 한다.

② 열린 술병을 소지하고 있거나 술을 마시는 사람은 제1항의 음주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술병에는 주류용기가 아닌 다른 용기에 술을 담은 것도 포함한다.

제11조(준용) 제6조·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보조금, 업무의 위탁, 표창의 수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「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, 「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, 「담양군 포상 조례」 등에 따른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